

기획조사 05-011

중남미 조달시장 진출가교
미주개발은행(IDB)

2005. 3. 11

KOTRA 해외조사팀

- 목 차 -

[요약]	i
1. 미주개발은행 연혁과 회원국	1
2. 미주개발은행의 주요 활동 및 사업분야	2
3. 프로젝트 절차	3
4. 미주개발은행, 채무국, 공급업체의 법적 관계	5
5. 구매원칙	7
6. 구매계획	9
7. 구매방법	10
8. 입찰홍보	11
9. 입찰참가서(오퍼)의 구성요소	12
10. 입찰 참가서의 제출과 개봉	13
11. 입찰참가서의 평가와 비교	15
12. 이의 제기	17
13. 미주개발은행 가입의 의의	18
14. 장기적인 활용 노력 필요	20

[요약]

1. 미주개발은행 연혁과 회원국

-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 IDB, <http://www.iadb.org/>)은 1959년 설립한 국제금융기관으로 중남미, 카리브해 국가 사회경제 개발을 목적으로 함
- 회원국은 미주개발은행 자금의 혜택을 받는 채무국(수혜국)와 채권국(시혜국)로 나뉘어짐.
- 한국이 2005년 최종 가입할 경우 회원국은 모두 47개국이 됨.

2. 미주개발은행의 주요 활동 및 사업분야

- 채무국(수혜국)의 발전을 지원하며, 발전계획의 수립과 필요 자금 조달, 계획 실행 등을 위해 기술협력을 제공함.
- 주요 지원사업은 도로, 수력발전소, 상수도 건설과 전력공급, 병원 설립, 중소기업 진흥 등 사회기반시설 개발 분야임.

3. 프로젝트 절차

- 프로젝트는 채무국 恣意的으로 실시할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사전기초계획, 프로젝트 발굴, 프로젝트 준비, 프로젝트 분석, 프로젝트 협상 및 승인, 프로젝트 실행, 프로젝트 사후평가 등의 단계로 구분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침.
- 프로젝트가 사전계획에서 사후평가까지 마무리되는 기간은 해당 프로젝트의 성격, 사업범위 등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최소한 3년에서 길게는 5-10년 걸리는 것도 있음.

4. 미주개발은행, 채무국, 공급업체의 법적 관계

- 미주개발은행과 채무국 또는 수혜국 사이의 법적 관계는 차관제공계약 또는 기술협력 계약에 의거해서 수립됨.
- 차관제공계약은 미주개발은행에게는 차관을 신청한 채무국에게는 프로젝트 시행자금을 제공할 의무를, 채무국에게는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과 부합하도록 프로젝트를 수행할 책임을 부여함.
- 기술협력협정은 미주개발은행과 채무국 혹은 수혜국 관련 기관이 기술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조치사항 등을 공식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법적, 공식적 수단임.

5. 구매원칙

- 미주개발은행 사용에 있어서 경제성, 효율성의 원칙과 함께 투명성, 도덕성, 윤리성, 경쟁, 적절한 절차, 균등, 홍보 및 정보접근성 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함.
- 입찰 참가 요건 관련, 미주개발은행에 의해 참가할 수 있다고 인정받은 국가(즉 회원국) 국적을 가진 자연인 또는 기업만 계약을 맺을 자격을 부여함.

6. 구매계획

- 채무국은 프로젝트 관련 모든 재화, 공공사업, 서비스 구매계획을 세워야 하며 이를 위해 프로젝트 준비 단계에서 구매계획을 세워 미주개발은행과의 합의에 이르러야 함

- 구매는 효율성과 경제성, 동질성이라는 기준에 따라 여러 종류의 입찰행위로 분류됨(예 : 국제입찰, 국내입찰 등).

7. 구매방법

- 국제입찰은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구매 과정에서 미주개발은행이 가장 많이 권하는 방법임.
- 정보공개와 자유경쟁 원칙은 전체 입찰과정에 적용되며 국내입찰의 입찰 홍보범위는 입찰 실시국의 영토로 제한됨.

8. 입찰홍보

- 홍보는 공개입찰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서 미주개발은행은 이를 통해 최대한 많은 우수한 업체의 참가를 유치함.
- 국제입찰과 국내입찰을 구별시켜 주는 요인은 입찰 관련 홍보를 국제적인 매체를 통해 하는가 여부임.

9. 입찰참가서(오퍼)의 구성요소

- 입찰참가서(오퍼) 준비 과정에서 발생된 비용은 입찰의 결과와 상관 없이 무조건 입찰참가자가 부담
- 재화와 연관서비스의 가격 제시는 입찰서류에 명시된 대로 따라야 하며 입찰서류가 명시하는 Incoterms 조건에 따름(CIP, DDU, DDP 중 하나).

10. 입찰참가서의 제출과 개봉

- 대규모 공공사업 계약을 수반하는 구매절차 또는 특별히 전문성이 높은 재화 구매의 경우 미주개발은행은 채무국이 예비입찰(*precalificación*)을 실시하며 컨설팅서비스의 경우 미주개발은행은 수혜국에게 사전선정(*preselección*) 작업을 실시할 것을 요구.
- 입찰실시기관 및 입찰참가업체는 어떠한 서류, 데이터, 정보 등 계약 관련 사항을 참가업체 상호 간 비공개로 유지해야 하며 참가업체 동의 없이 제출한 입찰참가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

11. 입찰참가서의 평가와 비교

- 입찰참가를 평가할 때, 입찰 실시기관은 오직 입찰서류에 명시된 기준과 방법만을 사용해 평가하며 다른 어떤 기준이나 방법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입찰을 취소하는 경우 입찰실시기관은 입찰 참가업체에 대해 하등의 책임을 지지 않음.

12. 이의 제기

- 입찰에 대한 이의제기에는 구매와 관련한 모든 종류의 클레임, 반대, 거부 또는 신청자와 제공자 관련 의견불일치에 표현 포함
- 입찰 참가업체는 이의제기와 항의를 구매과정 중 어떤 때라도 서면으로 제기할 수 있음

13. 미주개발은행 가입의 의의

-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플랜트 및 건설수주 실적은 우리나라의 다른 진출 성과에 비추어 볼 때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미미한 실정임.
- 우리나라의 미주개발은행 가입으로 미주개발은행이 발주하거나 미주개발은행 차관으로 실시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

14. 장기적인 활용 노력 필요

- 단기적 경제이익 추구를 넘어선 장기적인 경제발전의 전략적 동반자로서 협력을 확대할 전환점.
- 중남미에서 실시하는 대부분의 구매입찰, 정부조달 등은 유사한 면이 많으므로 미주개발은행 관련 프로젝트 절차를 이해하는 것은 중남미 제국의 일반 정부조달 절차를 이해하고 그에 참가할 수 있는 지름길임.

1. 미주개발은행 연혁과 회원국

-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 IDB, <http://www.iadb.org/>)은 1959년 설립한 국제금융기관으로 중남미 및 카리브 국가의 사회경제 개발을 목적으로 함.

- 민간부문, 공공부문에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
 - 추진사업은 일반사업(Operaciones Ordinarias), 특별사업(Operaciones Especiales), 기술협력사업(Operaciones de Cooperación Técnica) 등이며 사업성격에 따라 다른 재원으로 운영
- 그 외에 미주개발은행은 민간부문 프로젝트 지원에 중점을 두는 다자투자기금(Fondo Multilateral de Inversiones : FOMIN)과 미주투자공사(Corporación Interamericana de Inversiones : CII)와 같은 금융기구의 지원을 받음

- 미주개발은행 회원국은 IDB로부터 차관을 지원받을 수 있는 채무국(País prestatario - 受惠國)과 그의 반대 성격의 회원국인 채권국(País no prestatario - 施惠國)으로 나뉘어진 46개국으로 구성됨.

- 한국이 2005년 최종 가입할 경우 47개국으로 증가
- 채무국은 중남미 대륙 및 카리브 해에 위치한 개발도상국이고 채권국은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 그룹으로 구성
- 한국은 1979년부터 채권국으로 가입하기 위해 노력한 이래 2004년 가입 승인을 받았음.

- 채무국은 受惠國, 즉 미주개발은행 자금의 혜택을 받는 국가로서 미주개발은행이 자금이나 기술협력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국가이며 지리적으로 중남미 또는 카리브해에 위치하는 회원국임.

- 채무국은 아르헨티나,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자메이카,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도미니카공화국, 수리남, 트리니다드토바고,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 채권국은 미주개발은행에 재원을 제공해 주는 非受惠國으로서 미주개발은행 자금이나 기술협력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으로서 지리적으로 중남미나 카리브해 이외의 지역에 위치함.

- 非受惠國일지라도 미주개발회원국이 됨으로써 중남미와 더욱 긴밀한 관계를 공식적으로 향유할 수 있게 되며 회원국이 되지 않을 경우 항상 각 중남미 국가와의 양자관계에 의해 모든 협력활동을 전개해야 하는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 채권국이 될 경우 미주개발은행 자금으로 채무국에서 실시하는 모든 재화, 공공사업, 컨설팅서비스 등 구매에 참가할 자격을 부여함.

- 2004년 기준 채권국은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크로아티아, 덴마크, 슬로베니아, 스페인, 미국, 핀란드, 프랑스, 이스라엘, 이태리, 일본, 노르웨이, 네덜란드, 포르투갈, 영국, 스웨덴, 스위스

2. 미주개발은행의 주요 활동 및 사업 분야

- 미주개발은행은 설립협정에 명시된 것처럼 모든 자체 자본을 활

용하여 역내 수혜국의 발전을 지원하며, 발전계획의 수립과 필요 자금 조달, 계획 실행 등을 위해 기술협력을 제공함.

□ 주요 지원사업은 도로, 수력발전소, 상수도 건설과 전력공급, 병원 설립, 중소기업 진흥·발전 등 사회간접시설 및 개발 분야임.

- 2003년까지 IDB는 총 2,909억 달러에 이르는 투자로 다양한 개발계획을 지원했으며, 매년 대출 규모를 증가시켜 왔음. 대출규모는 1961년 2억 9,400만 달러에서 1998년 100억 달러로 정점에 달했음.

□ 과거 차관 제공은 생산부문(농업과 산업)과 사회간접자본부문(에너지, 운송), 사회부문(보건, 교육, 도시개발)에 집중되었으나, 최근에 지원 범위를 빈곤퇴치와 사회불평등 해소, 국가개혁 및 현대화와 경제통합 촉진, 정보화, 환경문제 개선 등으로까지 확장되는 경향을 보임.

3. 프로젝트 절차

□ 미주개발은행 채무국이 은행으로부터 받은 지원으로 실시하는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다음 단계의 과정으로 이루어짐.

○ 사전기초계획 수립(Programación)

- 특정한 프로젝트의 최초 시작 단계에 해당
- 채무국은 미주개발은행과 함께 그 나라의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나 과제를 파악하고 자국의 정치, 경제, 사회 등 일반상황을 검토한 사전기초환경조사 보고서를 미주개발은행에 제공

○ 프로젝트 발굴(Identificación)

- 미주개발은행과 개별 채무국은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과

문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발굴

- 채무국은 미주개발은행에 별도의 차관, 자금을 지원해 주도록 요청하며 프로젝트 계획 착수

○ 프로젝트 준비(Preparación)

- 채무국은 프로젝트안을 작성
- 작성한 프로젝트계획안 내에 차관 제공 또는 기술협력 프로그램 제공 요청 포함

○ 프로젝트 분석(Análisis)

- 미주개발은행은 차관제공 및 기술협력 요청서를 해당 채무국의 법적, 제도적, 기술적, 사회경제적, 재정적 측면에서 면밀히 분석하고 타당성을 판단함.
- 채무국, 즉 미주개발은행 차관 수혜국은 프로젝트 실시 일정 및 필요한 재화, 공공사업, 컨설팅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 준비해서 미주개발은행에 제출함.

○ 프로젝트 협상 및 승인(Negociación y aprobación)

- 미주개발은행과 채무국 간의 차관 및 기술협력 지원 협상 진행
- 미주개발은행은 프로젝트 분석 및 채무국과의 협상 내용에 따라 프로젝트를 최종 승인하는 단계

○ 프로젝트 실행(Ejecución)

- 해당 채무국은 미주개발은행 감독 하에서 프로젝트를 실행(일반적으로 재화, 공공사업, 컨설팅서비스 구매를 통해 실시).
-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채무국의 자의적으로 할 수 없으며 미주개발은행이 정하는 구매, 입찰 관련 절차와 규범에 따라야 함.

○ 프로젝트 사후평가(Evaluación)

- 프로젝트 설계, 실행, 자금지원, 영향 등에 대한 미주개발은행의 평가 단계로 해당 프로젝트의 성과 및 문제점 등을 평가함.
- 해당 프로젝트는 물론 이후에 실시하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판단기준의 역할을 함.

□ 미주개발은행이 위의 프로젝트 단계 중 직접 개입하는 것은 사전 기초환경조사, 프로젝트 발굴, 분석, 프로젝트 협상 및 승인, 프로젝트 실행, 프로젝트 사후평가 등의 단계임.

□ 프로젝트가 처음 사전계획에서 사후평가까지 마무리되는 것은 해당 프로젝트의 성격, 사업범위 등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최소한 3년에서 길게는 5년 이상 걸리는 것도 있음.

□ 이와 같은 프로젝트 절차를 프로젝트사이클이라고 부름.

4. 미주개발은행, 채무국, 공급업체의 법적 관계

□ 미주개발은행과 채무국 또는 수혜국 사이의 법적 관계는 차관제공계약(Contratos de préstamo) 또는 기술협력계약(Convenio de Cooperación Técnica)에 의거해서 수립됨.

□ 차관제공계약서와 기술협력협정은 구매절차, 채무국, 재화, 공공사업, 컨설팅서비스 공급업체 간의 관계 등 제반 필요사항을 설정함.

- 차관제공계약서를 일단 체결하면 미주개발은행에게는 차관을 신청한 채무국에게 프로젝트 시행자금을 제공할 의무를 부여함.

- 차관제공계약서는 또한 채무국에게는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과 부합하는 프로젝트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여하는 법적 성격을 지닌 협정임.
- 차관제공 계약은 1) 특별규정(Estipulaciones Especiales), 2) 일반규정(Normas Generales), 3) 부속서(Anexos) 의 세 부분으로 구성됨
- 기술협력협정은 은행과 채무국 혹은 수혜자(beneficiario)가 기술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조치사항 등을 공식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법적, 공식적 수단임.
- 프로젝트 수행 활동을 위한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업체와 채무국 입찰실시기관을 고유하게 연결시켜 주는 법적 관계는 재화, 공공사업, 서비스 계약에 의해 규정됨.
- 차관제공 계약에 의해 주어진 권리와 의무 중 프로젝트 실행과 관리는 채무국의 책임임.
- 채무국은 재화, 공공사업, 컨설팅서비스 계약에 의거, 공급업체에 계약한 대가를 지불해야 함.
- 공급업체의 주요 의무는 각 구매가 요구하는 사업의 실행, 물품의 공급, 혹은 컨설팅서비스 등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는 것임.
- 미주개발은행은 차관제공계약에서 언급한 자금을 채무국에게 전도하여야 할 의무와 프로젝트 실행과정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의 의무가 있음.
- 공급업체는 공공사업 시행, 재화 공급, 컨설팅서비스 제공 등 구매계약이 정하는 대상을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미주개발은행은 해당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차관지원계약 또는 기술협력계약 내용대로 지원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구매행위가 진행되도록 감독할 의무가 있음.

5. 구매원칙

- ☐ 효율적인 공급업체 및 계약업체 유치와 신뢰할 수 있는 안정된 시장 형성, 책임감 있는 공공자금 운영 및 효과적 사용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형평성 있고 투명한 절차와 확고한 정책 및 관행 적용이 필요함.
- ☐ 미주개발은행 설립협정에 규정된 재원사용에 관한 주요 원칙은 프로젝트 재원이 사용상의 경제성 및 효율성의 원칙과 함께 다음 원칙도 함께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임.
 - 투명성
 - 도덕성, 윤리성
 - 경쟁
 - 적절한 절차
 - 균등
 - 홍보 및 정보접근성
- ☐ 이러한 원칙을 적절히 준수한다는 취지에서 미주개발은행은 부패방지를 위해 채무국과 공급업체, 계약업체, 컨설팅업체, 컨설팅업자에게 가장 높은 수준의 윤리기준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음.
- ☐ 미주개발은행이 본부를 통해서 혹은 지부(Representación)를 통해서 부패관행을 적발하거나, 존재한다고 의심하거나, 혹은 본부를 통해 그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파악한 결과 그 정보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미주개발은행은 당사자의 낙찰을 취소할 수 있음.

- 낙찰업체 및 관련자 모두에게 해당 입찰에서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낙찰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할 자격이 없음을 통보함.

- 프로젝트 차관 취소, 차관원금 조기상환 요구, 차관액 중 기지출 금액 반납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 입찰 참가 요건 관련, 미주개발은행에 의해 참가할 수 있다고 인정받은 국가(즉 회원국) 국적을 가진 자연인 또는 기업만 계약을 맺을 자격을 부여함.

- ☐ 입찰 참가업체 간 이익충돌은 피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익충돌이란 동시에 한 개 이익 이상의 생각, 원칙 등을 만족시켜야 하고 일개 당사만의 의견을 존중할 경우 다른 당사자의 이익이 침해받는 경우 발생함.

- ☐ 대표적인 이익충돌의 경우

- . 특정 구매행위 과정에 연관된 당사자 사이의 상반된 이익
 - . 관련 기업체 사이의 충돌

- ☐ 국적의 판단 기준은 자연인, 법인 등 참가자 조건에 따라 다름.

- 미주개발은행 자금을 지원받고 특정계약에 의거해 공급되는 “재화” 및 “연관서비스”는 미주개발은행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것 이어야 함.

- 미주개발은행의 구매원칙, 정책, 구매절차는 100% 미주개발은행과 무관한 자금으로만 실시하는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미주개발은행

자금이 일부라도 포함되는 모든 프로젝트에 적용됨

- ☐ 모든 미주개발은행 자금 지원 프로젝트는 경제성과 효율성이라는 원칙 하에서 시행함.
- ☐ 입찰참가업체는 반드시 입찰실시기관에서 지정하는 언어(예 : 스페인)로 입찰 참가 오퍼를 작성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오퍼는 수락 거절됨.
- ☐ 한 가지 이상의 언어로 입찰 참가서류를 작성할 경우 어느 언어가 우선인지를 명기해 주어야 함.
- 미주개발은행의 공식 언어는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임.

6. 구매계획

- ☐ 채무국은 프로젝트 관련 모든 재화, 공공사업, 서비스 구매계획을 세워야 하며 이를 위해 프로젝트 준비 단계에서 구매계획을 세워 미주개발은행과의 합의에 이르러야 함.
- 채무국은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주개발은행 정책과 일치하도록 구매계획을 수립해야 함
- ☐ 입찰은 각 프로젝트의 성격, 프로젝트에서 기대되는 이익에 따라 적절한 규모로 이루어짐.
- ☐ 수혜국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된 상세한 구매계획을 작성하여야 함.

- 구매계약 개요 설명
- 구매계약의 대략적인 규모 설명
- 구매계약의 재원 (미주개발은행, 채무국 자체 예산 사용, 다른 금융기관 등)
- 구매형태 (국제입찰, 국내입찰, 가격비교 등)
- 입찰에 참여할 공급업체 리스트를 확정하기 위한 별도과정으로서 실시할 예비입찰 관련 사항
- 입찰과 예비입찰 실시 일정
- 입찰 관련 사항

☐ 일단 미주개발은행이 구매계획을 승인할 경우 미주개발은행 집행 이사회 차관지원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내에 구매계획서가 포함되어야 함.

☐ 구매는 효율성과 경제성, 동질성이라는 기준에 따라 여러 종류의 입찰행위로 분류할 수 있음(예 : 국제입찰, 국내입찰 등).

7. 구매방법

☐ 국제입찰은 다른 국제기구와 마찬가지로 공공부문의 구매 과정에서 미주개발은행이 가장 많이 권하는 방법임.

☐ 그러나 해당 산업분야, 계약, 적용영역 등의 상황에 따라 다른 구매방식을 허용하기도 함.

☐ 정보공개와 자유경쟁 원칙은 전체 입찰과정에 적용되며 국내입찰에서 입찰 홍보범위는 입찰 실시국의 영토로 제한됨.

☐ 민간기업체 입찰에서의 입찰 홍보는 일반적으로 기회균등과 자유경쟁 원칙을 바탕으로 하되 소정의 공급업체리스트에 올라 있는

기업에게만 한정됨.

- ☐ 직접계약 방식은 경쟁절차를 존중하지 않고 특정 공급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적어도 정부, 공공기관 입찰에 있어서는 적절한 구매방법으로 간주되지 않으나 아주 예외적인 경우(예 : 공급업체가 한 개 업체밖에 없는 경우) 직접계약 방식을 허가하기도 함.
- ☐ 미주개발은행에 의해 특별한 상황인 경우, 지나치게 복잡해서 시일이 너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프로젝트를 수행할 경우 미주개발은행은 특정한 업체에 다양한 오퍼레이션과 서비스 제공 권한을 일괄적으로 부여하는 특별계약을 체결하도록 허가할 수 있음.
- ☐ 긴급구매는 일정한 회원국이 천재지변과 같은 긴급 상황에서 민첩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하도록 미주개발은행이 허가한 예외적인 계약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입찰과 공공경쟁에서 요구하는 특정 요구사항을 단순화한다는 것이 그 특징임.

8. 입찰홍보

- ☐ 홍보는 공개입찰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서 미주개발은행은 이를 통해 최대한 많은 우수한 업체의 참가를 유치함.
- ☐ 입찰은 공공입찰 혹은 민간입찰로 나누어지며 모두 적절한 홍보 과정을 거쳐야 함.
- ☐ 공개입찰은 국제입찰 혹은 국내입찰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공공분야에서 경제성과 효율성의 원칙을 가장 잘 보장해 주는 재화, 공공사업, 컨설팅서비스 구입 절차는 국제입찰임.

- ☐ 국제입찰과 국내입찰을 구별시켜 주는 요인은 입찰 관련 홍보를 국제적인 배포범위를 지닌 매체를 통해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이며 참가업체가 국내업체로 제한되든가 하는 것은 국제입찰과 국내입찰의 구분 기준이 아님.
- ☐ 따라서 국내입찰의 경우에도 입찰 참가업체를 국내업체로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9. 입찰참가서(오퍼)의 구성요소

- ☐ 입찰참가서(오퍼)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수수료 등은 입찰의 결과와 상관 없이 무조건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 ☐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제안서에 명기하는 가격은 다음 사항을 만족시켜야 함.
 - 총 공급가격(할인액 제외) 제시
 - 각 항목별 상세내역 및 그 가격 제시
 - 가능한 할인율과 적용방법 제시
- ☐ 재화와 연관서비스의 가격 제시는 입찰서류에 명시된 대로 따라야 하며 입찰서류가 명시하는 Incoterms 조건에 따름
 - 항상 **CIP, DDU, DDP** 중 하나를 요구함.
- ☐ 세금과 관세의 적용 역시 입찰서류의 요구 조건에 의해 정해짐
- ☐ 공공사업 가격과 관련, 가격과 비용을 계약내용 이행시기 내에 조정할 수 있을 경우 계약업체는 조정산식에 고려할 각종 지표와 가중치 등을 제공해야 함.

- ☐ 입찰 참가업체가 재화, 공공사업, 서비스 등에 대해서 견적을 내고 제안서를 제출하고 지불조건을 제시할 때 선택하는 통화는 미주개발은행 회원국이 국제무역에서 사용하는 어떠한 통화라도 무방함.
- ☐ 어떠한 경우에도 환율 리스크는 계약업체 또는 공급업체가 부담하지 않음.
- ☐ 입찰오퍼의 유효기간은 입찰서류에 명시하며 입찰 시행기관이 설정한 입찰제안서 제출기한 마지막 날로부터 계산함.

10. 입찰 참가서의 제출과 개봉

- ☐ 가격 및 기술적 복잡성 등을 고려할 때 대규모 공공사업 계약을 수반하는 구매절차 또는 특별히 전문성이 높은 재화 구매의 경우 미주개발은행은 채무국이 별도 예비입찰(precalificación)을 실시할 것을 요구함.
- ☐ 국제입찰을 통해 구매하는 컨설팅서비스의 경우 미주개발은행은 수혜국에게 사전선정(preselección) 작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함.
- ☐ 예비입찰의 목적은 입찰참가 신청자의 재정능력, 경쟁력, 그리고 충분한 경험을 검증은 목적으로 함.
- ☐ 예비입찰 심사는 입찰제안서가 평가 단계에 들어가기 이전에 독립적으로 행해질 수 있음.
- ☐ 예비입찰서 제출은 1매의 봉투에 넣어서 해야 하며 여기에는 참가업체의 해당 입찰 참가 자격, 재정상태, 사업경력, 연혁 등 입찰서류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시켜야 함.

☐ 예비입찰이 입찰과정의 일부분으로 행해질 경우 입찰 제안서를 2개 봉투에 넣어 제출하도록 하기도 함.

- 즉, 한 개의 봉투에는 예비입찰 검증에 필요한 내용 및 기술제안서를 제출하며 다른 한 봉투에는 최종 입찰에 사용하는 가격 자료를 제출함.

☐ 모든 지연 제출한 입찰제안서는 접수하지 않음.

☐ 입찰참가서류 제출 마감일이 되기 이전에는 입찰 참가업체는 적의 위임받은 자가 서명한 통보문을 통해 입찰참가서류를 취소, 대체, 또는 수정할 수 있음.

☐ 국제입찰 참가서류 개봉은 참가서류 제출 마감시각 이후의 시각에 입찰참가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공개적으로 실시함.

☐ 참가업체가 제출한 입찰참가서류를 다른 모든 필요한 정보와 함께 낭독하며 공식행사로서 실시했음을 기록상으로 남김.

☐ 국내입찰에서 입찰참가서 개봉은 국제규범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입찰 실시국(즉 채무국)국내법에 의거해 실시함.

☐ 비공개 원칙에 의해 입찰실시기관은 공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게 예비입찰, 계약 수주 관련 권고사항 등 어떠한 정보도 제공할 수 없음.

☐ 입찰실시기관 및 입찰참가업체는 어떠한 서류, 데이터, 정보 등 계약 관련 사항을 참가업체 상호 간 비공개로 유지해야 하며 참가업체의 동의 없이는 제출한 입찰참가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

- ☐ 어떠한 경우에도 접수한 서류를 계약과 관련 없는 다른 목적에 활용하지 않아야 함.
- ☐ 비공개 의무는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유효하며 계약만료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불문하고 비공개의무는 준수해야 함.

11. 입찰참가서의 평가와 비교

- ☐ 입찰참가제안서를 평가할 때, 입찰 실시기관은 오직 입찰서류에 명시된 기준과 방법만을 사용해 평가하며 다른 어떤 기준이나 방법도 적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 입찰서류에 의거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낙찰되는 공급업체, 계약업체, 또는 컨설팅업체가 해당 입찰에서 요구하는 계약사항을 만족스럽게 수행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이후 이의제기 등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효과적인 증거 및 판단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임.
- ☐ 공급업체, 계약업체, 컨설팅업체의 자질이 다음과 같은 항목 내에서 구매서류에서 지정한 요건과 일치하는가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함.
 - 입찰참가 자격요건 충족 여부
 - 과거의 계약불이행 이력
 - 재정 상태
 - 기업경력
- ☐ 자격요건은 특정한 자연인 혹은 법인이 가지고 있는 타인과 구별되는 양도 불가능한 고유의 속성임.
- ☐ 입찰 참가자격 평가는 입찰 사전단계 혹은 완전히 독립된 형태

(즉 예비입찰)로 행하기도 하고, 입찰제안서의 제출과 동시에 하기도 하며, 또는 기술 및 가격 제안서의 평가 이후에 사후심사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음

□ 평가에 관한 한 구매기관(입찰실시기관)은 입찰참가 기업체에게 추가적으로 입찰참가서 내의 의문사항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런 설명은 입찰실시기관에서 서류상의 산술적인 계산오류를 발견해 지적하고 바로 잡는 경우 외에 결코 가격이나 오퍼의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을 가하는 설명은 허용되지 않음.

- 정정 과정을 통해 정정할 수 있는 것은 “내용의 오류”, “유보”, “누락”, “실수” 등의 경우임

□ 참가업체가 제출한 입찰참가서의 모든 조건을 검토하고 그 기술사양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입찰서류가 요구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입찰참가서는 거절됨.

- 입찰 실시기관은 최종 입찰 결과를 발표하기 전 何時라도 모든 입찰제안서를 반려할 수 있으며 입찰 자체를 취소할 수도 있음.

- 입찰을 취소하는 경우 입찰실시기관은 입찰 참가업체에 대해 하등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취소에 대한 어떤 클레임도 제기할 수 없음.

□ 입찰서류가 요구하는 조건에서 이탈하거나, 그 내용을 유보하거나, 생략하거나, 실수 없이 모든 조건과 사양을 만족시킬 때 입찰제안서가 실질적으로 예비입찰 또는 입찰서류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함.

□ 재화, 공공사업, 컨설팅서비스 구매 관련 기술제안서를 평가함에 있어 입찰실시기관은 입찰제안서 상의 기술측면을 평가해서 그 기술사양이 원래의 입찰서류 요구조건을 탈피하거나 생략함에 없이 모두

만족시키는지를 확인해야 함.

- ☐ 가격제안서를 평가함에 있어 관세, 판매 이윤세 등 제반 조세는 포함하지 않고 가격만을 가지고 평가함.
- ☐ 예비입찰에서 탈락된 입찰참가서류는 모두 거절하며 이 경우 거절된 입찰참가서는 비록 사후에 수정하더라도 다시 동일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 입찰참가서 평가 단계가 지난 다음에 입찰실시기관은 일반적으로 가격이 가장 낮으면서 입찰서류가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참가업체를 낙찰시키나 이것은 각 프로젝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2. 이의 제기

- ☐ 입찰에 대한 이의제기에는 구매와 관련한 모든 종류의 클레임, 반대, 거부 등 의견불일치 표현을 포함함.
- ☐ 입찰 참가업체는 이의제기와 항의를 구매과정 중 어떤 때에라도 서면으로 제기할 수 있음.
- ☐ 입찰 결과를 공표한 후에는 10일의 간의 이의제기 기한이 있으며 이 기한을 넘겨 접수된 항의나 반대 의견은 미주개발은행이 접수를 거부함.
- ☐ 접수된 이의제기는 우선 계약당사자(즉, 입찰실시기관)에 의해 처리되지만 이 경우 만족스럽게 해결하지 못할 경우 마지막 단계로 미주개발은행이 해결하며 미주개발은행의 구매위원회의 분쟁 관련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항소할 수 없음.

- 입찰 과정 중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해결결과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해당 프로젝트 구매입찰 절차가 중지됨.
- 미주개발은행 감독위원회는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미주개발은행 자금 지원과 관련된 사거나 부조리에 대한 고소를 접수함.
- 이 기구는 해당 고소 건을 조사하는 업무 전반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조사 결과를 실제 미주개발은행 운영에 적용하는 역할까지 수행함.

13. 미주개발은행 가입의 의의

- 중남미 지역은 1990년대 이후 개혁·개방정책의 성과에다 역동적인 경제통합체 추진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및 투자대상 지역으로 부상했음.
- 우리나라의 총 수출 대비 중남미 수출 비중은 1992~2003년 기간 연평균 6.0%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해외직접투자도 2003년 말 현재 4.7% 비중을 점하는 등 경제협력 관계는 긴밀해지고 있음.
- 이와 같은 양자간의 경제협력 강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對 중남미 플랜트 및 건설수주 실적은 우리나라의 다른 진출 성과에 비추어 볼 때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미미한 실정임.
 - 2003년 말 까지 우리나라의 총 해외건설수주에서 중남미시장이 차지하는 비중(누계기준)은 1.7%에 불과.
 - 對중남미 플랜트 및 건설·인프라시장 진출의 문제점으로는 언어 및 문화적 격차, 현지정보 획득의 어려움, 저가 수주 및 과당경쟁, 자금조달 및 금융지원의 미비, 미주개발은행 미가입에 따른 현지 프로젝트 참여 원천 배제 등이었으며 그 밖

에도 중남미의 높은 국가위험도(Country Risk)를 진출의 장애요인으로 알려짐.

□ 우리나라의 미주개발은행 가입으로 우선 연간 80억불을 상회하는 미주개발은행 발주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

- 많은 개발프로젝트에서 우리나라는 경쟁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음.

□ 미주개발은행 회원국에게는 연간 80억 달러에 달하는 차관 조달 시장에도 참여할 기회가 제공됨.

- 우리나라는 미주개발은행 가입을 통해 획기적인 對중남미 수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현지 인지도 제고를 통해 중남미 건설 및 인프라시장에 본격 참여할 수 있는 보다 많은 기회를 갖게 됨.

- 중남미 인프라 시장은 이미 선진국 유수 기업체들이 선점하고 있어 경쟁이 매우 치열한 데다가 우리 업계의 경우 자금동원 능력이 제한적이어서 진출에 상당한 어려움을 안고 있으나 미주개발은행 가입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됨.

□ 한국산 생산설비, 기계류, 노우하우 등 對중남미 수출의 획기적인 증대 기회

- 중남미에서 중미지역은 일반적으로 미국산 생산설비를 선호하고 남미지역에서는 유럽산 기계류를 선호하면서 이들 제품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으나 미주개발은행 가입으로 한국산 플랜트류 수출기회가 확대됨.

- 미주개발은행 관련 프로젝트는 대부분의 국제개발기구의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모든 절차가 비교적 공정하고 절차가 분명하므로 현지 기반이 미약한 우리업체가 진출하기에 비교적 유리한 측면이 있음.
- 미주개발은행의 대외신인도가 높아 미주개발은행과 공동으로 사업 추진시 해외에서 자금조달도 매우 유리해짐.
- 특히 미주개발은행 발주 프로젝트는 차관사업이므로 자금회수의 어려움이 없고(우리 건설업체의 중동지역 미수금 과다) 대출금리도 매우 저렴함.
- 미주개발은행 발주 프로젝트는 일반 개발 프로젝트와 달리 차관을 이용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으로서는 대금회수가 쉬운 장점이 있음.

14. 장기적인 활용 노력 필요

- 우리나라의 총 해외건설수주에서 중남미시장이 차지하는 비중(누계기준)은 아직은 극히 미미하지만 앞으로 미주개발은행 가입을 계기로 중남미의 건설, 사회인프라 건설 분야로의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
- 미주개발은행 가입은 조달시장 참여 등 단기적 경제이익 추구를 넘어선 장기적으로 중남미지역과 경제발전의 전략적 동반자로서 협력을 확대할 전환점을 만들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음.
- 따라서 일본의 예에서 보듯이 중남미와 카리브지역 회원국의 경제 및 사회개발 지원이라는 미주개발은행의 설립이념에 더욱 충실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의 경우 단순히 일본 상품만을 중남미에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기술 지원, 사회경제 개발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장기적인 측면에서 중남미에서의 일본의 인지도를 높이고 그 위치를 견고하게 하고 있음.
- 따라서 IDB 가입이후 이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방향을 재정비, 단기적으로는 현지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반적인 협력의 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중남미 경제사회개발 참여도 확대해 나아가야 함.

- 미주개발은행의 설립 목적이 중남미 지역의 경제개발과 사회발전에 있음을 직시하고 중남미의 사회 인프라 발전, 빈곤퇴치, 제도개선 등 수많은 對중남미 개발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새로운 기회로 활용 가능함.
-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필요한 각종 노우하우, 기술, 플랜트, 기계류 등 수출기회가 획기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전망됨.

□ 안정적인 자원 확보의 계기로도 활용할 수 있음.

- IDB가 지원하는 생산부문에서 광업개발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은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한 방안이 될 수 있음.
- 특히 중국의 중남미 자원 개발 투자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중남미에서 자원 및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인적·물적 교류의 확대, 정보교류활성화로 잠재력*이 큰 중남미 시장과의 상호 협력 가능성이 증대했음.

* 인구 약 5.1억명(전세계 인구의 8.5%), 은(31.8%), 구리(20.5%),

주석 (20.9%) 등 천연 자원과 대두(브라질 1위), 커피, 사탕수수 등 자원의 보고

- 중남미 경제·사회 발전 특히 기술 교류협력과 빈곤퇴치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한·중남미 관계의 심화·발전 기대
- 최근 4년간 무역수지 흑자의 48.3%(연평균 52억불 수준)가 중남미 지역으로부터 발생

□ 미주개발은행 차관 조달 시장은 회원국 기업만이 참여가 가능하며 규모 면에서 약 89억불로 아시아개발은행의 2배 이상으로 세계은행 조달시장에 이은 2번째 규모임

- 조달시장은 만성적인 외자부족 문제를 가진 대다수 중남미 국가의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음.
- 세계 우수 기업이 경쟁한다는 공신력으로 인해 중남미 진출을 위해서는 미주개발은행 차관 조달시장 참여가 필수조건임

□ 따라서 앞으로 미주개발은행 자금을 이용한 프로젝트, 구매입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항상 가지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구매 및 입찰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중남미에서 실시하는 대부분의 구매입찰, 정부조달 등은 유사한 면이 많으므로 미주개발은행 관련 프로젝트 절차를 이해하는 것은 중남미 제국의 일반 정부조달 절차를 이해하고 그에 참가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고 할 수 있음.

KOTRA 발간자료목록 (2003-2005)

□ 기획조사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3-01	2003년 1월중 해외시장 수요전망	2003.1
03-02	세계시장 개방추이변화의 시사점및대응방안	“
03-03	2003년 2월중 해외시장 수요전망	2003.2
03-04	2003년 중국 경제 뉴트랜드	2003.3
03-05	2003년 3월중 해외시장 수요전망	“
03-06	2003년 4월중 해외시장 수요전망	2003.4
03-07	이라크전후 복구사업 진출방안 및 KOTRA 지원대책	"
03-08	2003년 5월중 해외시장 수요전망	2003.5
03-09	2003년 6중 해외시장 수요전망	2003.6
03-10	2003년 하반기 수출전망	“
03-11	중국시장에서의 한·대·일 경학동향분석	“
03-12	이라크전후 중동시장진출 종합대책	“
03-13	7월중 해외시장 수요전망	2003.7
03-14	월드컵개최후 국가이미지	2003.6
03-15	WTO 분쟁해결 우리의대응방안	2003.7
03-16	주요국 서비스분야 비관세 장벽	“
03-17	DDA 협상개요	“
03-18	POST-SARS-수출전망	“
03-19	2003 수입규제 동향	2003.7
03-20	EU 수입시장에서의 한중일 경합통상	2003.7
03-21	국민소득2만불달성에관한 주제국전략 및 시사점	2003.8
03-22	8월중 해외시장수요전망	“
03-23	멕시코 자동차수입시장개방현안과대책	2003.9
03-24	9월중 해외시장 전망	“
03-25	WTO유통서비스협상 동향 및 대책	2003.10

03-26	10월중 해외시장 수요전망	“
03-27	FTA 체결지연으로 수출기업경쟁력불리	“
03-28	11월중 해외시장 수요전망	2003.11
03-29	12월중 해외시장 수요전망	2003.12
03-30	브랜드이미지조사	“
03-31	주요국환경규제현황 및 대응방안	“
03-32	해외무역관에서 바라본 2004년도 수출전망	“
03-33	의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제안 Zara와 Marks & Spencer 사의 사례에서 배운다	2003.12
03-34	홈센터 외국유통기업의 중국진출동향과 우리기업의 진출전략	2003.12
03-35	중남미 국별 FTA추진현황 및 우리나라와의 추진가능성	2003.12
03-36	수출20대국 한국산 일류상품 경쟁현황	2003.12
03-37	2003년 대한수입규제 동향 및 2004년 전망	2003.12
03-38	<WTO DDA> 정부조달 투명성 협상 동향	2003.12
04-01	1월중 해외시장 수요전망	2004.1
04-01	2월중 해외시장 수요전망	2004.2
04-03	인도, 태국 FTA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2004.2
04-04	중국진출 일본기업의 경영실태 분석 및 시사점	2004.2
04-05	2004년 3월중 해외시장 수요전망	2004.3
04-06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주요국 현황 및 대응사례	2004.2
04-07	수출 엘도라도 Brics를 잡아라	2004.3
04-08	쿼터제 폐지 후 대미 수출 전망	2004.3
04-09	2004년 4월중 해외시장 수요전망	2004.4
04-10	ASEAN 지역 FTA 확산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2004.3
04-11	섬유 수입쿼터 폐지에 따른 주요 섬유수출국 대응방안	2004.4
04-12	일본-멕시코 FTA 체결 후 한국의 대멕시코 주요 수출상품별 영향분석	2004.4
04-13	5월중 해외시장수요 전망	2004.5
04-14	미국의 對리비아 경제제재 완화 이후 시장 환경 및 진출방안	2004.4

--	--	--

04-15	WTO/DDA 비농산물 분야 비관세장벽 리스트 분석	2004.5
04-16	외국기업의 중국기업 M&A 현황 및 전망	2004.5
04-17	6월중 해외시장 수요전망	2004.6
04-18	WTO/DDA 반덤핑 협상 동향과 우리의 대응방안	2004.6
04-19	러시아 개발 프로젝트 현황 및 우리기업의 진출방안	2004.6
04-20	EU 수입시장에서의 한중일 경합동향	2004.6
04-21	브라질 시장에서의 한중일 경합동향	2004.6
04-22	국내 IT기업의 해외진출 현황과 시사점	2004.6
04-23	대만을 기점으로 한 일본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동향	2004.6
04-24	2004 해외진출 한국기업 현황 분석	2004.6
04-25	중국의 CCC 인증 전면 실행현황 및 우리의 대중 수출 투자에 미치는 영향	2004.6
04-26	2004 하반기 해외시장 수요 전망	2004.6
04-27	일본시장에서의 한.중.미 경합동향 분석	2004.6
04-28	2004년 상반기 수입규제 동향 및 하반기 전망	2004.6
04-29	7월중 해외시장 수요 전망	2004.7
04-30	수출2000억불시대 국가 이미지 현황 및 시사점	2004.7
04-31	주요국의 對韓 섬유쿼터 해제 품목 리스트 - 미국, EU, 캐나다의 對韓 섬유쿼터 해제 품목 -	2004.8
04-32	선진국 신규 환경규제와 우리수출에의 영향 및 대응방안	2004.9
04-33	WTO/DDA 무역원활화 논의동향과 향후 전망	2004.9
04-34	8월중 해외시장 수요전망	2004.7
04-35	9월중 해외시장 수요전망	2004.8
04-36	WTO 통일 원산지 규정 협상 동향과 대응 방안	2004.9
04-37	원유 및 원자재 가격상승에 대한 주요국 동향	2004.10
04-38	섬유 교역자유화 이후 미.중 섬유 교역 전망	2004.11
04-39	해외 윤리경영 사례	2004.11
04-40	7월중 해외시장 수요전망	2004.7
04-41	8월중 해외시장 수요전망	2004.8

04-42	9월중 해외시장 수요전망	2004.9
04-43	10월중 해외시장 수요전망	2004.10
04-44	11월중 해외시장 수요전망	2004.11
04-45	12월중 해외시장 수요전망	2004.12
04-46	한국문화 및 문화상품이미지조사	2004.11
04-47	2005년도 수출전망	2004.12
04-48	중국 서부 대개발 현황과 우리의 진출방안	2004.12
04-49	중동 최대 수출시장, 이란을 잡아라	2004.12
04-50	중남미 시장에서의 외국인투자동향과 우리의 진출현황	2004.11
04-51	한.중.일 3국의 에너지확보전략 비교 및 우리의 대응방안	2004.12
04-52	EU 확대 후 6개월 - 폴란드, 헝가리, 체코 동향 및 우리의 대응방안	2004.11
04-53	북미 실버시장현황 및 진출방안	2004.11
04-54	중국에서의 지적보호 매뉴얼	2004.12
04-55	중국진출기업 사례분석	2004.12
04-56	세계 FTA 추진현황 및 주요 수출시장에서 한국상품 차별사례	2004.12
04-57	교토의정서 발효대비 선진국 대응방향	2004.12
04-58	중국의 출판업시장현황 및 우리기업의 진출현황	2004.12
04-59	아세안의 VIP시장을 주목하라	2004.12
04-60	2004년도 대한수입규제 동향 및 2005년도 전망	2004.12
04-61	ASEAN 비관세장벽 현황조사	2004.12
05-001	위안화 평가절상, 초읽기에 들어갔나	2005.1
05-002	주요시장의 수입급증품목과 한국상품의 경쟁동향	2005.1
05-003	일본을 통해 본 우리의 환경 대책	2005.2
05-004	아프리카 무역 Trend변화와 대처방안	2005.2
05-005	해외시장 수요전망	2005.1
05-006	해외시장 수요전망	2005.2

05-007	중국의 FDI 확대와 드러나는 비즈니스 리스크	2005.2
05-008	중국제품의 시장잠식과 EU주요국 섬유, 의류업계 피해 및 대응 동향	2005.3
05-009	3월 해외시장 수요전망	2005.3
05-010	칠레시장에서 한-칠레 FTA 체결 이후 시장점유율 변화	2005.3
05-011	중남미 조달시장의 가교 미주개발은행(IDB)	2005.3

□ 현안리포트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5-001	부시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미 통상 여건 변화 전망	2005.1
05-002	이라크 총선 이후 경제통상 전망 및 활용전략	2005.2
05-003	美 05/ 06 예산 연두교서 무엇을 담나?	2005.2
05-004	우크라이나의 EU 가입논의 동향 및 전망	2005.2
05-005	동남아 쓰나미/ 지진 복구 추진현황 모니터링	2005.3
05-006	중국의 대중동 경제협력강화와 대응방안	2005.3
05-007	WTO 설립 이후 10년간 對韓 반덤핑 조사 개시 현황 분석	

작성자

■ 해외조사팀	박강욱 선임연구원
■ 해외조사팀	성기주 책임연구원

중남미 조달시장 진출가교 미주개발은행(IDB)

발행인 : 채 훈

발행처 : KOTRA

인쇄처 : 학림사 02)752-0463

발행일 : 2005년 3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9
(우 137-749)

전 화 : 02)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 2005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